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09
------	------

2014. 2. 25.
재정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년 11월 1일

나. 제안자 : 김용석(金容錫) 의원(찬성의원 10명)

다. 회부일자 : 2014년 2월 7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3차 재정
경제위원회(2014년 2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 서울시 참여예산제 2년간의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의 정의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Ⅲ . 주 요 내 용

- 시·구 공무원과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하고 참여예산 위원회에서 배제 (안 제2조 제2항 신설).
- 총회 결정과정에 일반주민 의견 반영근거 마련(안 제21조③,④).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 남 중)

가. 개정안의 개요

- 김용석(金容錫)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공무원 등의 참여 제한이 없어, 일부 자치구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타 자치구에 불리한 심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이를 배제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두가 참석하여 주민참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총회에서 일반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전속적으로 행사하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2012년 5월 22일 시행)된 제도임.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2년간 시행한 결과, 예산편성 단계에 시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의 요구사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형태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진화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공무원의 참여 배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총회에서 일반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일부 개선되어야 할 미비점이 지적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다. 참여예산위원 구성에서 공무원의 참여 제한(안 제2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의 참여에 대한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 서울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주민의 자격으로 위원으로 신청이 가능함

(조례 제2조).

- 이로 인해 지난 2013년에는 위원선정과정에서 개인응모로 현직 자치구 공무원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발견되어 분과 위원회 심사 직전 위원회의 의결로 전원 해촉된 바 있음.
- 이처럼 자치구 공무원이 위원으로 활동하면 전체의 공익보다는 소속 자치구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으며, 권역별 제안사업 사전심사 등에서 타 자치구에 불리하게 심사할 수 있음.
- 특히, 순수 시민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자치구 공무원은 참여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따라서 위원 구성에서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이 ‘순수시민에 의한 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며, 참여 예산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총회에서 일반주민의 의견 반영(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 개정안은 총회 결정과정에서 일반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250명¹⁾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적·사업적 대표성 부여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함이 있다고 봄.
- 그러나 시민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행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 모두가 참석하여 주민참여예산 편성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총회에서 일반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은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총회 시민참여단’ 등과 같은 대규모의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나, 지역단위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종합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 증진을 위한 체계 정립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업타당성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위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였음.

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주민에서 제외한다.

안 제2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안 제21조 제4항 중 "그 절차는 규칙

으로 정한다.”를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한다.

③ 총회는 위 제2항 및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 과정에 일반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주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주민에서 제외한다.</p>
<p>제21조(총회) ①~② <생략></p> <p>③ <u>총회에는 일반 주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u></p> <p>④ <u>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⑤ <생략></p>	<p>제21조(총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총회는 위 제2항 및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주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④ <u>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